

# 도핑제보처리지침

## 목 차

###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1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제 3 조(적용범위)	1
제 4 조(제보자의 권리와 의무)	2
제 5 조(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2

### 제2장 도핑제보의 처리

제 6 조(도핑제보의 접수)	2
제 7 조(제보내용의 보완 등)	3
제 8 조(제보내용의 이송)	3
제 9 조(도핑제보의 처리)	3
제 10조(처리기간 및 계산)	3
제11조(처리기간의 연장)	3
제12조(타 기관과의 협조)	4

### 제3장 처리결과의 통지

제13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4
제14조(처리결과의 통지)	4
제15조(처리지연의 신고)	4

### 제4장 도핑제보의 통제 등

제16조(도핑제보 통제원)	4
제17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제출)	4
제18조(위반상황에 대한 조치)	4
부칙	4
별지	
제1호 도핑제보처리부	5

# 도핑제보처리지침

제 정 2018. 7. 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도핑제보(이하 “제보”라 한다)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보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제보 처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핑제보”라 함은 도핑방지규정위반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가. 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한 경우

나.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경우

다. 구체적 진술내용 또는 증거자료 없이 단순 추측성 제보를 한 경우

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마. 제보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제보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2. “제보자”라 함은 위원회에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진술·증언·증거 등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가맹기구”라 함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서명하고 규약 준수에 동의한 기구를 말한다.

4. “대상자”라 함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로 조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선수”라 함은 가맹기구, 정부 또는 규약을 수용한 기타 체육단체 권한 하의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선수지원요원”이라 함은 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치료하거나, 지원하거나, 함께 일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요원, 임원, 의무요원, 준 의료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7. “조사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정관 제5조에 따라 도핑방지를 위한 정보활동 및 조사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말한다.

8. “제보통제원”이라 함은 제보업무를 총괄 통제하는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보 대상자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 2. 규약을 준수하는 가맹기구 및 WADA 인증 시험실 임직원
- 3. 위원회로부터 자격을 인증받은 시료채취요원

**제4조(제보자의 권리와 의무)**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결과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이 철저히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보행위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위원회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제보자는 조사활동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 할 의무를 가진다.
- 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추가정보 제공, 증언 등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⑥ 진행 중인 조사활동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
- ⑦ 조사과정 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 ⑧ 제보자가 공범인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0.6.1항에 따라 제재감경의 보상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관련 타 도핑방지기구와 사법기관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위원회에 제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5항 “부정행위”에 따라 제보자를 제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제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과정을 종료 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제보담당자는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하여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 ⑤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안전하게 제보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핑제보 시스템을 갖출 의무를 가진다.
- ⑥ 제보자의 개인정보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조사와 관련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수집된 정보, 물리적 증거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 ⑧ 위원회 요청에 따른 증인참석비용 등의 실비는 위원회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제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 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18조에 따라 선수 및 이해관계자에게 도핑제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교육 및 홍보할 의무를 가진다.

## 제2장 도핑제보의 처리

**제6조(도핑제보의 접수)** ① 제보에 관한 정보는 도핑제보시스템 또는 전용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부서 내 제보담당자가 접수한다.

② 제보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제보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접수된 제보는 제보내용에 따라 분류 후 필요 시 타 부서와 제보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보에 관한 서류의 접수는 별지 제1호의 도핑제보 처리부에 의한다.

**제7조(제보내용의 보완 등)** ① 제보담당자가 제보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접수한 때로부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보자에게 문서,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제보가 보완을 요할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보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보내용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하되, 제보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제3항의 정한 기간 내에 제보내용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⑤ 제보자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제보내용의 이송)** ① 도핑방지규정위반 외 협박, 뇌물수수, 사기, 폭행 등 범죄가 관련된 제보의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포함된 제보의 경우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 등 타 도핑방지기구로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제9조(도핑제보의 처리)** ①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조사 및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내용에 따라 제보담당자는 직접 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조사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개최가 인정될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위원을 소집하여 처리한다.

③ 동일한 제보자가 동일한 제보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제보담당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기간 및 계산)** 제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1일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보내용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제보내용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제보내용으로써 그에 따른 소집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타 도핑방지기구, 사법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조요청에 소요되는 기간
5. 제보자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제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11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제보의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1조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처리지연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 기관과의 협조)** 위원회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보 처리의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진행상황 및 처리 예정일 등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처리결과의 통지

**제13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두 기관이 관련되는 제보내용으로서 이를 주된 기관이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처리기간이 21일 이상 소요되는 제보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보자에게 그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1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제보에 대하여 조사 및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지연의 신고)** 제보자는 도핑제보서류의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 구비서류의 첨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도핑제보 통제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4장 도핑제보의 통제 등

**제16조(도핑제보 통제원)** ① 위원장은 제보업무를 총괄 통제하는 담당부서장을 도핑제보 통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도핑제보 통제원은 제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했거나 제보자가 제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보담당자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제출)** 담당부서장은 제보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제보를 기한 내 처리 후 그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제1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담당부서장은 제보 처리 상황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제보담당자, 제보내용을 공유받은 직원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2018.7.9>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